

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[별표 6]

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(제9조 관련)

작성기관	기 록 사 항	보존기간
품질관리 검사기관의 장	가.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서류 나. 검사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	3년 해당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
의료기관의 개설자 등	가.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 영상출력물 과 그 검사소견서 나.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성적서 다.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 기록대장 라. 특수의료장비 수리·교정·변경 이력대장	5년 3년 3년 해당 장비를 철거할 때까지